

함양군 · 경남신용보증재단

저신용 · 저소득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업무협약서

함양군(이하 "군"이라 한다)와 경남신용보증재단(이하 "재단"이라 한다)은 관내 저신용·저소득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을 위해 상호협력 하에 본 협약을 체결하고, 저신용·저소득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함양군 관내 저신용·저소득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"군"과 "재단"이 상호 적극 협력하고, 이에 따른 각 기관의 역할과 의무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① "특례보증"이란 본 협약체결 이후 취급은행에서 신규 대출하는 대출금에 대한 재단의 신규 개별보증을 말한다.
- ② "출연금"이라 함은 특별보증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"군"에서 "재단"에 저신용·저소득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출연하는 금액을 말한다.
- ③ "저신용 소상공인"이라 함은 보증신청일 현재 대표자의 개인 신용평점이 하위 20%(744점) 이하인 소상공인을 말한다.
- ④ "저소득 소상공인"이라 함은 연 소득 3,500만원 이하인 소상공인을 말한다.

제3조(출연금) "군"은 원활한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보증재원으로 5천만원의 특별출연을 "재단"에 출연한다.

제4조(지원규모) 지원규모는 출연금의 6배수로 한다

제5조(지원대상) 본 특례보증의 지원대상은 함양군에 소재한 저신용·저소득 소상공인으로 한하며, 세부적인 지원대상은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



제6조(지원한도) 본 특례보증의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최대 2천만원 이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한다.

제7조(보증만기) 재단의 특례보증에 의한 신용보증서의 만기는 4년 이내로 한다.
(2년거치 2년 원금균등분할상환)

제8조(우대지원) 본 특례보증은 보증비율(100%) 등을 우대지원하며,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 처리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.

제9조(협약 운용기한) 본 협약은 다음 각 호에 의한 시기 중 빠른날까지 운용한다.

1. 보증지원 한도 소진시
2. 대위변제로 출연금 소진시

제10조(협약의 효력) ①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
②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“군”과 “재단”이 쌍방의 합의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11조(업무협조 및 비밀유지) ① “군”과 “재단”은 본 협약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긴밀히 협조하며, 특례보증 지원실적 등 통계자료를 상호 공유한다.
② “군”과 “재단”은 업무수행에 있어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기밀을 유지하며, 정보의 공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12조(협약의 해석) 이 협약의 해석상 의문이 있거나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“군”과 “재단”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해석하는 바에 따른다.

제13조(협약변경)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다.

제14조(협약해지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협약 당사자 어느 한쪽이 본 협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불이행하는 경우
2. 본 협약의 목적달성이 곤란한 경우
3. 협약 당사자가 상호 합의한 경우



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어느 한쪽이 협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 예정
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5조(준용규정 등)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협약 당사자의 관계 법령, 재단의
제규정 및 기준 등에 의하고, 관계 법령, 재단의 제규정 및 기준 등에도 정함이 없는
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한다.

제16조(기타) 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재단의 적극행정업무에 대하여 관련자를 면책
한다.

협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협약당사자가 상호 날인
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4년 3월 일

함 양 군
군수 진병영



경남신용보증재단
이사장 이효근 (인)

